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위반행위 처분 확행

1.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3. 12. 3. 첫 발생 이후 3개 시도, 9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2. 개별 축산농장·시설·차량 등 축산관계자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의 생활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나,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지자체의 온정주의적 점검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축산농장·시설·차량 등 축산관계자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니,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감액·경감·처분 제외 등의 조치는 엄격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관계법령을 세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발·과태료 부과 및 생계안정비용·예방약품 등 정책사업 지원 제외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적극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축산계열화법, 건축법, 폐기물 관리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등
5.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에서는 축산관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병원성 AI 방역관련 위반행위 처분 확행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관련 보상금 감액 등 지원 제외 대상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2, 축산정책관4),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 역학조사과, 위험평가과, AI연구진단과, 동식물빅데이터팀), 시도 동물방역부서장, 유관기관단체(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수의사회, 양계, 육계, 육용종계부화, 산란계, 토종닭, 오리, 메추리, 계란산업, 난가공)

사무관 이경란 조류인플루엔 전결 2023. 12. 21.
자방역과장 김용상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9335 (2023. 12. 21.)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65 팩스번호 044-868-0660 / genie4u@korea.kr / 대한민국 공개